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등 8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함을 명확화(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함

나.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4조)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대조 또는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2조(「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3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7조(「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및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통지) (생 략) <u><신 설></u>	제18조(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원 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생략) <u><신설></u>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 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 관할 수 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정의 통지) (생 략) <u><신 설></u>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결 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 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생략)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통지) (생 략) <u><신 설></u>	제17조(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 원 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생략) <u><신 설></u>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 서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 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 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u>보관하여야 한다.</u>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 서 송달) ① ----- ----- ----- ----- ----- ----- ----- <u>보관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관 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② (생략) ③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 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 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 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후단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④ <u>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 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 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조 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적 형태 로 보관할 수 있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④·⑤ (생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통지)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8조(통지)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및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통지) ① (생략) <u><신설></u>	제25조(통지)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① (생략)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u>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생략) <u><신설></u>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생략) <u><신 설></u>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07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4407
국방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82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팀	
연 락 처	(044) 215 - 415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연 락 처	(044) 230 - 2313
통일부 남북자대책팀	
연 락 처	(02) 2100 - 559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6396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5 - 1484